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8
----------	------

제출일자 : 2025. 11. 28.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세무부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해 통합 돌봄 기능을 구축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조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정

##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세무과 : 팀 신설(세정, 주민면허세)

팀 이동(지방소득세 → 징수과)

· 징수과 : 팀 이동(지방소득세 ← 세무과)

명칭변경(자동차 → 자동차세)

· 복지정책과 : 팀 신설(통합돌봄)

· 안전총괄과 : 팀 신설(안전정책)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5. 11. 4. ~ 11. 19.)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정·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주민면허세 등에 관한 사항
3. 세입관리·채납정리·채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정책·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별 표】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공원과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총무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병 가 라. 공 가 마. 특별휴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같은 조례 제23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 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수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2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30조
회계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행정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교통지도과	1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자원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나. 유류금품의 처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바. 장애등급의 조정 사. 장애상태의 확인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차. 보행상의 장애가있는 자에 대한 배려 카. 장애인보장구신청서수합및 실태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설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도로의 점용허가 (공사, 굴착, 건축수반허가 제외) 점용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법 제61조, 제63조, 제73조, 제101조</li> <li>•도로법 제66조, 제69조, 제70조</li> <li>•도로법 제106조</li> <li>•도로법 제117조 제3항 제3호</li> </ul>
도시정책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li> </ul>
하수하천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li> </ul>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li> <li>•같은 법 제6조의3</li> </ul>
산림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보호법 제15조</li> <li>•산림보호법 제34조</li> <li>•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li> </ul>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행정국)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u>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u> 3. <u>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 등에 관한 사항</u> 4. ~ 7. (생략)</p> <p>제8조(주민복지국) ① (생략) ② (생략) 1. <u>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에 관한 사항</u> 2. ~ 5. (생략)</p> <p>제9조(건설도시국)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u>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에 관한 사항</u> 3. ~ 10. (생략)</p>	<p>제6조(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세정, 지방세부과, 법인관리, 과표, 주민면허세</u>----- 3. <u>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세·지방소득세</u> ----- 4.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주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통합돌봄</u>----- 2. ~ 5. (현행과 같음)</p> <p>제9조(건설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안전정책·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u>----- 3. ~ 10.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